

<p>마지막으로 다시 社會福祉費 部分에서 保健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保健所 公務員數만 이렇게 測定單位에 算定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原案입니다. 그런데 이 保健所라는 것은 말이죠, 낙후된 自治區의 保健所 利用率이 財政自立도가 높은 그런 自治區의 保健所보다 利用率이 무려 120%가 높습니다. 그런데 議員님들 잘 아시다시피 保健所의 事業이라는 것은 收益事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測定單位도 그냥 人口數, 公務員數로만 測定하게 되어 있다면 財源調整이 어려운, 그래서 追加更正豫算을 上程해서라도 所要의 豫算을 充當할 수 없는 이런 自治區는 어떻게 합니까?</p> <p>이 自治區가 서울에 무려 6個 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本案을 審議하면서 충분히 檢證이 되었어야 될, 그래서 檢證된 後에 修正動議가 불가피한 이런 問題點이 있다고 本議員은 묻고 싶습니다.</p> <p>따라서 本議員이 質問을 몇 가지 했습니다만 該當 常任委員會에서 本 條例案이 原案대로 可決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事由가 있었는지를 答辯해 주시고, 修正動議가 불가피한 몇 가지 項目에 있어서 修正을 하지 않고 原案대로 可決한 그 理由에 대해서 本議員이 納得할 만큼 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대단히 감사합니다.</p> <p>○議長 文一權 수고했습니다.</p> <p>방금 劉大運議員께서 質疑하신 事項에 대하여 審査報告를 하신 內務委員會 崔光雄議員 나오셔서 補充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崔光雄議員 內務委員會 崔光雄議員입니다.</p> <p>방금 劉大運議員께서 指摘하신 內容에 대하여 저희 열일곱 분 內務委員會 委員 여러분께서 지난 10月 23日 第2次 內務委員會에서 충분한 檢討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本議員이 審査報告書에서 報告드린 대로 本 條例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施行過程과 研究結果에 따라서 추가로 合理的인 調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또한 報告드린 바 있고, 특별히 이번 條例案이 이번 會期에 處理되어야 될 理由를 좀 說明드린다면 이번 改正條例案의 主要 骨子が 特別交付金을 5%에서 10%로 上向 調整하는</p>	<p>部分, 그리고 財政力이 脆弱한 區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調整交付金을 10% 加算交付할 수 있는 條項을 第6條의2로 新設 하였습니다. 이 部分에 대해서는 우리 主務局長과 課長께서 형식적인 條文이 아니라 來年度 財政交付金 制度를 運營하면서 실제로 施行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p> <p>그리고 그 自治區 基準財政需要 測定方法 變更 內容은 충분히 우리 議員님께서 指摘하신 內容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內務委員會의 全體 委員님들께서 研究하기로 하고, 그리고 우선 昨年度 94年度에 市政開發研究院에서 研究用役을 통해서, 改善 等に 관한 研究用役을 통해서 밝혀진 重要하게 指摘된 內容에 대해서 우선 1次 改正을 하고, 此後로 改正을 하지는 그런 意見들이 導出되어서 오늘 審査報告를 하게 된 것입니다.</p> <p>이상입니다.</p> <p>○議長 文一權 그러면 內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p> <p>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p> <p>(「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가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p> <p>(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액으로 한다.</p> <p>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조정율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곱하여 얻은 조정기준재정</p>
---	---

수요액에서 당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한다.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각 자치구 기준  

$$\text{조정률} = \frac{\text{재정수입액의 합산액} + \text{보통교부금 총액}}{\text{재정부족액이 발생한 각 자치구 기준 재정수요액의 합산액}}$$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보통교부금 가산교부) ①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도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기준재정수요충족비율에 못미치는 자치구에 대해 가산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가산교부금액은 제6조제1항에 의한 배분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교부후에도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각 자치구에 대해 기준재정수요비율에 따라 가산교부한다.

제7조제1항중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을 “곱하여 얻은 액과 고정비용을 합산한 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측정항목·측정단위와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제8조제2항중 “세외수입 등의 수입”을 “전년도 지방세수입·경상적세외수입추계액과 결산차액 및 당해년도 세외수입 등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기타 공공복지시설”을 “기타 공공시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표(제7조제2항관련)

(단위: 원)

측 정 항 목	측 정 단 위	표시 단위	고 정 비 용	단 위 비 용	
1. 의회운영비	의원정수	1인	570,728,896	13,088,003	
2. 일반행정비	가. 기획관리비	구공무원수	4,137,864,493	14,097,374	
	나. 내무행정비	인구수	7,103,682,405	1,771	
		동공무원수		13,246,016	
다. 재무행정비	행정구역면적	1km <sup>2</sup>	494,065,460	15,201,041	
	과세건수	1건		249	
3. 사회복지비	가. 복지사업비	인구수	2,930,017,421	4,750	
		저소득가구수		1가구	549,985
	나. 보건위생비	행정구역면적	1km <sup>2</sup>	3,477,267	3,477,267
		가구수	1가구		1,738
	보건소공무원수	1인	501,638,040	17,386,508	
다. 환경녹지비	환경미화원수	1인		21,872,828	
	녹지대 면적	1m <sup>2</sup>	501,638,040	8,172	
	도시시설물의 연장	1m		416,575	
4. 산업경제비	인구수	1인		101	

측 정 항 목		측 정 단 위	표시 단위	고 정 비 용	단 위 비 용
5. 지역개발비	가. 도시개발비	도로의 면적	1㎡	320,560,421	200
		시가화가능면적	1km <sup>2</sup>		25,333,004
	나. 건설사업비	가로등·보안등수	1등수	3,633,604,836	298,027
		도시계획면적	1km <sup>2</sup>		27,924,910
		도시시설물의 연장	1m		1,098,222
	다. 치수하수사업비	하수도의 연장	1m		2,555
빗물펌프장		1개소	121,248,433		
도시계획면적		1km <sup>2</sup>	66,341,693		
6. 민방위비		민방위대원수	1인		2,741

<별표2>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제7조제2항관련)

측 정 단 위	수 치 산 정 기 준	단 위
1. 의원정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회의 의원정수	인
2. 행정구역면적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관할구역의 면적	km <sup>2</sup>
3. 인구수	주민등록표상 인구수	인
4. 가구수	주민등록표상 세대수	가구
5. 구공무원수	자치구의 구분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단, 국고 및 시비보조인력분은 제외)	인
6. 동공무원수	자치구의 동사무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단, 국고 및 시비보조인력분은 제외)	인
7. 보건소공무원수	자치구의 보건소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수	인
8. 파세건수	자치구에서 부과·징수한 구세와 시세·세외수입 조정건수	건
9. 저소득가구수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요보호 대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 가구수	가구
10. 환경미화원수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미화원수	인
11. 녹지대 면적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일반녹지, 분리대, 수벽, 수림대 등 녹지대 면적	㎡

측 정 단 위	수 치 산 정 기 준	단 위
12. 가로등·보안등수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가로등·보안등수	등
13. 도시계획면적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면적	km <sup>2</sup>
14. 시가화가능면적	도시계획구역 면적 중에서 미개발된 시가화 가능면적	km <sup>2</sup>
15. 도로의 면적	도시계획법상 도로로서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면적	m <sup>2</sup>
16. 도로시설물의 연장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로서 교량, 보도육교, 지하보차도, 일반터널의 연장	m
17. 빗물펌프장수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빗물펌프장 개소수	개소
18. 하수도의 연장	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관거, 암거, 개거, U형 측구의 연장	m
19. 민방위대원수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에 편성된 민방위 대원수	인

7. 서울特別市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09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內務委員會 金種求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種求議員 안녕하세요? 內務委員會 所屬 國民會議 金種求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10月 24日 第3次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火災豫防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現行 火災豫防條例는 消防法에서 條例에 委任한 事項 中 보일러, 난로, 電氣施設 等 불을 使用하는 設備의 構造와 管理의 基準, 住宅·農藝用 危險物과 少量危險物의 貯藏 取扱基準, 特殊可燃物의 貯藏 取扱基準, 극장, 카바레, 百貨店 等 不特定 多數人이 出入하는 場所의 客席, 通路 等の 基準, 條例違反 行爲에 관한 過怠料 賦課 基準 等を 規定하여 우리 日常生活에서 불과 관련된 施設과 引火性, 또는 發火性 等の 危險物質의 取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規制하고 있으며, 現行 條例 第31條는 少量危險物 等

申告 및 用途廢止 申告義務를 規定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改正條例案은 輕油 200ℓ 以上, 1,000ℓ 未滿의 少量危險物 및 指定 數量 10倍 未滿의 農藝·魚貝類 養殖場의 煖房用 危險物과 棉花類, 대패밥 等 特殊可燃物의 申告와 用途廢止 申告義務를 削除하고, 아울러 申告 怠慢에 따른 過怠料賦課 規定을 削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條例를 改正하게 되는 主要 理由는 政府의 世界化, 開放化 政策에 따라 國際競爭力을 強化하기 위한 行政規制緩和策의 일환으로 消防安全管理에는 實利益이 적으면서 市民이 불편을 느끼는 規制事項을 解止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本 改正條例案은 政府에서 95年 2月 9日 各市·道 火災豫防條例準則改正案이 示達되었으며, 서울市에서도 95年 2月 20日 立法豫告 完了하였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各市·道에서는 95年 6月 14日 以前에 이미 改正完了한 事項으로써 우리 委員會에서 95年 10月 24日 第3次 內務委員會에서 消防本部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및 深度 있는 討論過程을 통하여 本 條例案을 改正하고자 하는 理由가 타당하다고 보아 與野 滿場一致로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